



자원유효이용촉진법과 관련 제시책

Law for Promotion of Effective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its Related Measures

名木稔 / (재) 클린 재팬 센터 환경 재활용 정보 센터장

I. 서두

21세기에 일본이 '자원과 환경의 제약'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달성시키기 위해 순환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급속히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순환형 경제 시스템이란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 용인되어 왔던 사회적 룰이나 행동 기준을 전환하고 환경 제약이나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을 산업 활동과 경제 활동의 모든 면에 적용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즉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환경·자원에 대한 대응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제 성장의 구동력으로써 작용하여 '사업활동의 환경계약·자원계약 대응의 적용(산업의 환경화)'과 '환경계약·자원계약에 대한 대응을 통한 시장 가치의 창조(환경의 산업화)'에 의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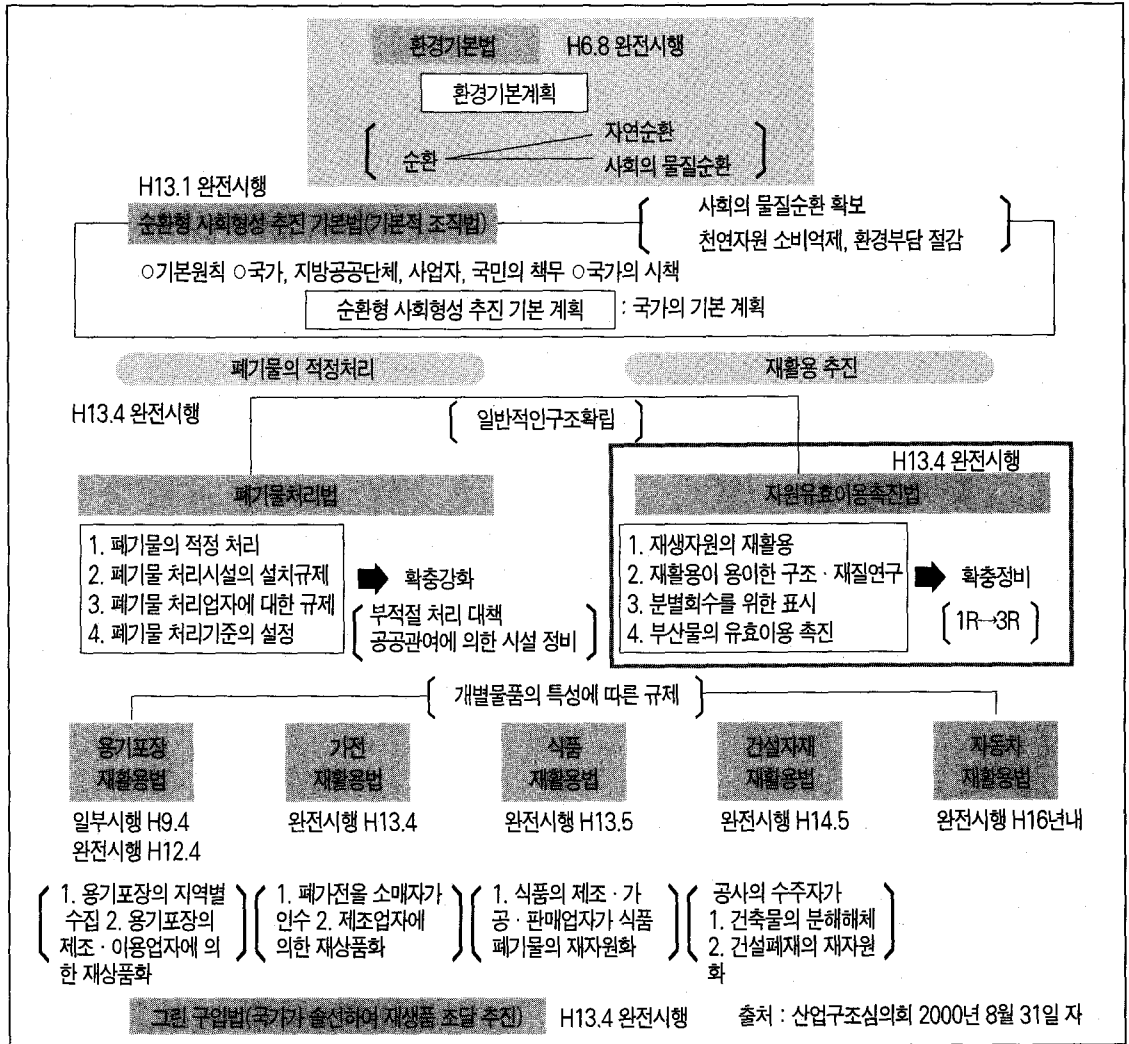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구조 심의회 지구 환경 부회, 폐기물 재활용부회의 합동기본문제 소위원회는 1999년 7월에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순환 경제 비전' 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안으로써 '재활용' 대책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감소(Reuse)', '재이용(Reuse)' 대책의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1991년에 제정된 '재생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생자원 이용촉진법)의 발본적인 개정에 돌입하고 법률명도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유효이용촉진법)로 개정함과 동시에 관계 정·성령을 정비하고 2000년 6월 성립, 2001년 4월에 시행했다.

본 법은 일본의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해 정비된 법체계 [그림 1] 중에서 재활용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심의회는 1990년도 이래 구법을 포함하여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비롯한 재활용 관련법 대상의 업종·품목 및 그 외 중요 품목·업종에 대해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재활용으로써 다루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품목별·업종별 폐기물 처리·재활용 가이드라인'

[표 1] 순환형 사회형성의 추진을 위한 법체계



으로써 제시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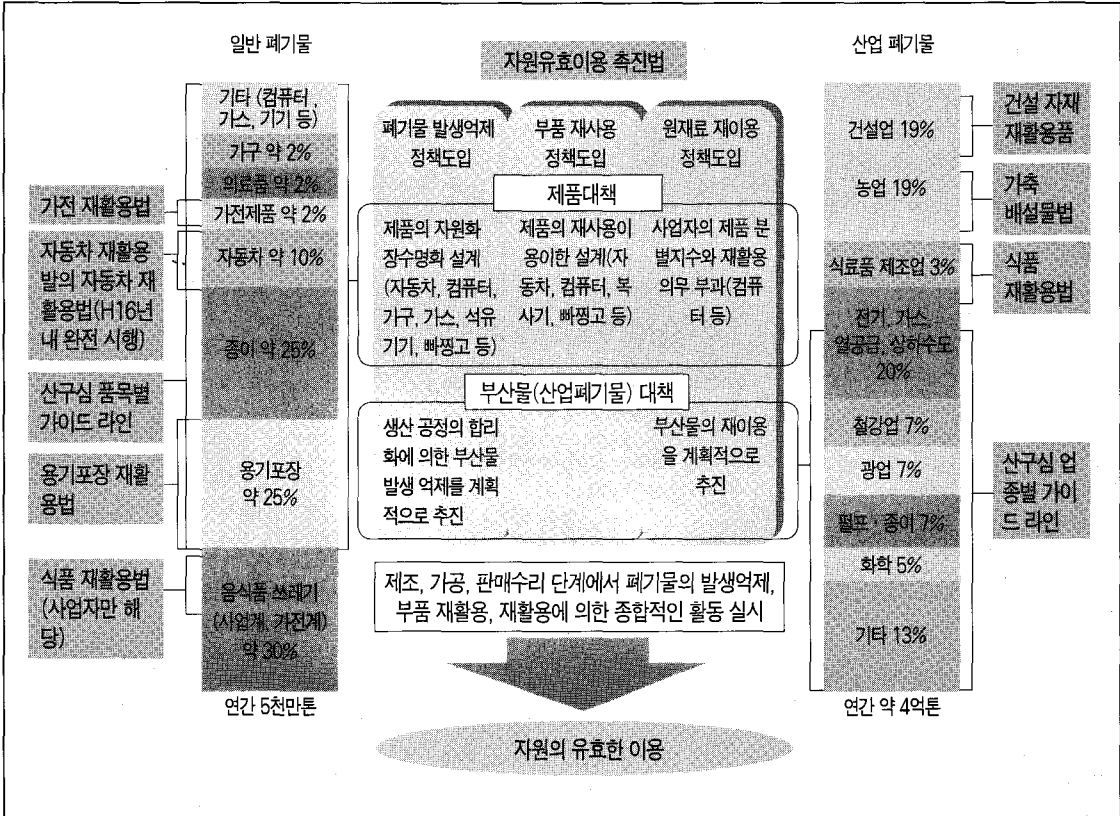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룰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관계 주체 사이에 일부 혼란도 있었다.

산업구조심의회 환경부회 폐기물·재활용 소

위원회의 기획 워킹 그룹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2002년 2월에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를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한 시스템(전체)



1.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대해

1-1. 개요

기존에 1991년에 시행됐던 '재생자원이용촉진법'에 의해 종이, 유리병 등의 재이용(재활용), 빈 캔이나 페트병의 분별을 쉽게 하는 식별 표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재이용(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등이 규정되었다.

본법은 여기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에 의한 제품의 회수 및 재이용의 실시 등 재활용 대책을 강화

② 제품의 생자원화·장수명화 등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억제(Reduce)

③ 회수한 제품으로부터 부품 등을 재이용(재이용)하는 대책을 새롭게 실시함으로써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그림 2).

본 법에서는 3R(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정 생자원 업종, 지정 재이용 촉진제품 등 7가지의 분류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다((표 1)의 위에서 3행 참조). 또한 3R의 활동이 필요한 업종

[표 1] 자원유효이용 촉진법의 품목·업종

구분	부산물의 감소·재활용	재이용 부품사용	재활용 재사용	감소고려 설계	재이용 고려 설계	재활용 고려 설계	분별회수 표시	사업자의 회수재활용	부산물 재 활용촉진
구법의 명칭		특정업종			제1종 지정제품	제2종 지정제품			지정부산물
신법의 명칭	특정 생자원 업종	특정재이용업종		특정 생자 원화 제품	지정재이용촉진제품		지정표시 제품	지정 재 자원화 제품	지정 부산물
용 기 포 장	PET병	-	-	-	-	-	○(기존)	-	-
	스틸캔	-	-	-	-	-	○(기존)	-	-
	알미늄캔	-	-	-	-	-	○(기존)	-	-
	유리병	-	-	○(기존)	-	-	-	-	-
	플라스틱용기포장	-	-	-	-	-	●(신규)	-	-
	종이용기포장	-	-	-	-	-	●(신규)	-	-
종이	-	-	○(기존)	-	-	-	-	-	
자동차·오토바이	-	-	-	●(신규)	●(신규)	○(기존)	-	-	
가 전	전자렌지, 외류건조기	-	-	●(신규)	-	●(신규)	-	-	-
	가전(4품목)	-	-	●(신규)	-	○(기존)	-	-	-
소형2차 전지 사용기기 (전기만 해당)	-	-	-	-	-	●(추가)	-	●(신규)	
가스, 석유기기	-	-	-	●(신규)	-	●(신규)	-	-	
금속제 가구	-	-	-	●(신규)	-	●(신규)	-	-	
컴퓨터	-	-	-	●(신규)	●(신규)	●(신규)	-	●(신규)	
소형2차전지	-	-	-	-	-	-	●(추가)	●(신규)	
빠징고대	-	-	-	●(신규)	●(신규)	●(신규)	-	-	
욕실유니트	-	-	-	-	-	●(신규)	-	-	
시스템 키친	-	-	-	-	-	●(신규)	-	-	
복사기	-	●(신규)	-	-	●(신규)	-	-	-	
경질염화비닐관·이음매	-	-	●(신규)	-	-	-	●(신규)	-	
경질염화비닐재 빛물받이 염화비닐재 바닥재 벽지	-	-	-	-	-	-	●(신규)	-	
철강업	●(신규)	-	-	-	-	-	-	-	
종이펄프제조업	●(신규)	-	-	-	-	-	-	-	
무기, 유기화학공업제품 제조업	●(신규)	-	-	-	-	-	-	-	
동 제1차 정련, 정제업	●(신규)	-	-	-	-	-	-	-	
자동차 제조업	●(신규)	-	-	-	-	-	-	-	
전기업	-	-	-	-	-	-	-	○(기존)	
건설업	-	-	○(기존)	-	-	-	-	○(기존)	

주 1. ○표시 : 기존, ●표시 : 지정업종·제품

주 2. 소형2차 전지사용기기는 무선전화, MCA시스템, 통신장치, 간이무선용 통신장치, 아마추어용 무선기, 비디오 카메라, 진공청소기, 전동칫솔, 가정용 전기치료기, 프린터기, 전원장치, 휴대용 전화용 통신장치, 팩시밀리, 교환기, 비상용 조명기구, 화재경보장치, 방범경보장치, 의료용 기기, 전동 자전거 등이다.

주 3. 지정제품표시의 경질염화비닐관·이음매에는 경질염화비닐관만 해당



및 제품 등을 정령에서 지정하고((표 1)에서 ○ 또는 ●를 붙인 업종, 품목), 거기서 각 사업자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령에서 정해진 대상 사업자이고 그 생산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지만 활동이 정령에서 정해진 대상사업자가 활동하는 내용(이 법률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에 따라서 현저하게 불충분할 경우에는 주무총리는 해당사업자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를 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무총리는 공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래도 사업자의 활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무총리는 관계 심의회 의견 등을 들은 후 해당사업자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위반은 벌금 50만엔이다.

본 법은 품목·업종을 총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1)상류(설계·제조단계)에서 하류(사용후 단계)까지 3R(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2)사업자의 자주성을 살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법률이고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활동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3).

1-2. 대상사업자의 활동 의무 사항

1-2-1. '특정생자원 업종'

[표 1]에 기재한 '특정생자원업종' (5업종)에 속하는 사업자 ①은 주무총리가 정한 '판단의 기준' ②에 기초해서 부산물 ③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주

무총리에 제출해야만 한다.

- ① '특정생자원사업자' 라고 한다.
- ② 대상사업자의 활동 의무 내용
- ③ 유가, 역유상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슬러지, 슬래그)

● 판단의 기준은 부산물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목표를 정한다. 설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그 운용의 개선에 힘쓴다. 업무의 총괄 관리자를 선임한다. 사양이나 규격에 따라 가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계측, 기록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1-2-2. 특정재이용업종

[표 1]에 기재한 '특정재이용업종' (5업종)에 속한 사업자(주1)는 주무총리가 정한 '판단의 기준'에 기초해서 재생자원, 재생부품을 이용해야 한다.

- ①: '특정재이용사업자'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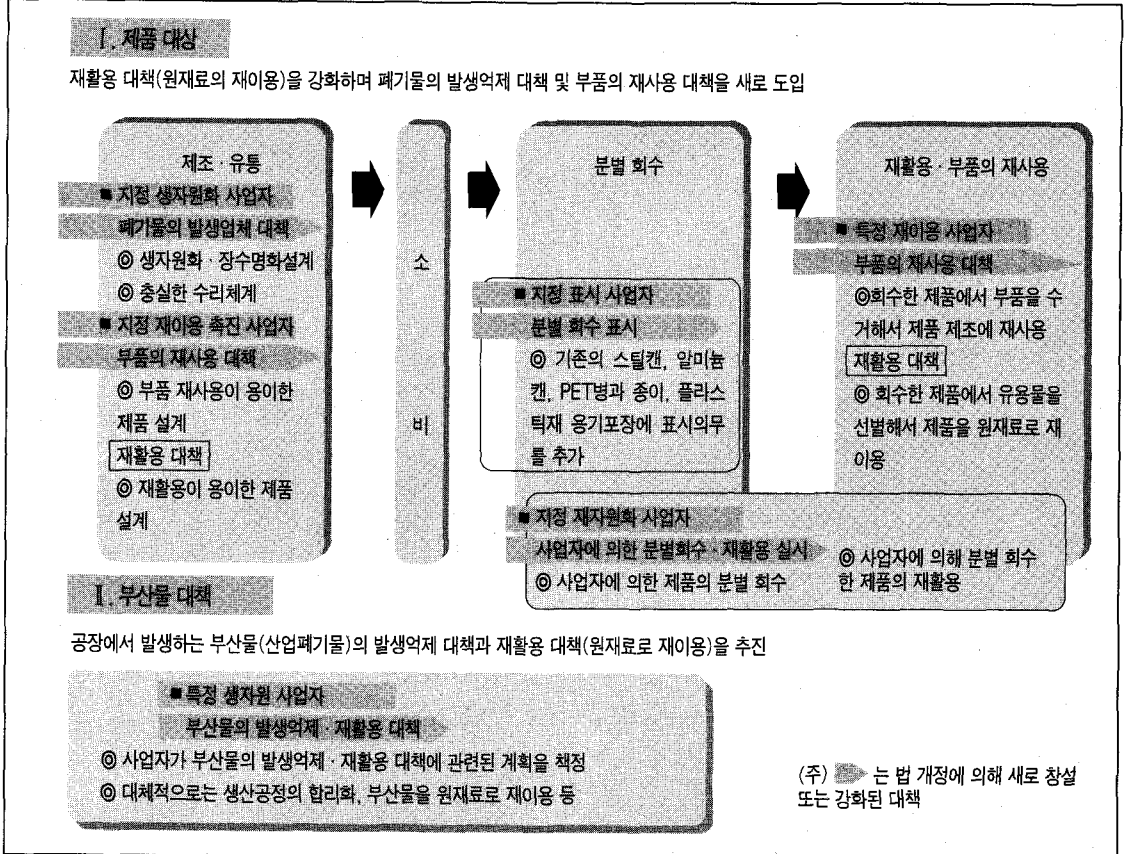
판단의 기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사업자는 재생자원, 재생부품의 이용량을 향상시킨다. 설비를 정비한다. 기술을 향상시킨다. 재생자원 이용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 상황을 기록한다. 품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1-2-3. 지정 생자원화 제품

[표 1]에 기재한 '지정 생자원화 제품' (19품목)의 제조 사업자 ①은 주무총리가 정한 '판단의 기준'에 기초해서 생자원화·장수명화의 설계를 위해 사용후 물품 등의 발생억제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활동



① : '지정 생자원화 사업자' 라고 한다.

판단의 기준은 원재료 등의 사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제품의 장기간 사용을 촉진한다. 수리에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한다. 수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한다.

기술을 향상시킨다. 규정에 따라 미리 제품을 평가한다. 간소하고 경량인 포장재를 사용한다. 제품의 구조, 수리에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1-2-4. 지정 재이용촉진제품

[표 1]에 기재한 '지정 재이용촉진제품' (50품목)의 제조사업자 ①은 주무총리가 정한 '판단의 기준'에 기초해서 재활용 및 재이용하기 쉬운 설계를 한 재생자원, 재생부품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① : '지정재이용 촉진사업자' 라고 한다.

판단의 기준은 원재료의 연구를 실시한다. 표시 등의 연구를 하고 분별을 쉽도록 한다. 제품의 안전성, 내구성 등을 배려한다. 규정에 따라



미리 제품의 평가를 한다. 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 포장재를 연구한다. 구조를 연구하고 제품의 처리를 쉽게 한다.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처리에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한다. 제품의 구조, 수리에 관련된 안전성, 부품을 떼어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1-2-5. 지정표시제품

[표 1]에 기재한 '지정표시제품'의 제조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①은 주무총리가 정한 제품의 '표시의 표준'에 기초해서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을 위한 분별회수를 쉽도록 하는 식별표시를 해야 한다.

①: '지정표시사업자'라고 한다.

- '표시의 표준'

(생략)

1-2-6. 지정재자원화제품

[표 1]에 기재한 '지정재자원화' (2품목)의 제조사업자 ①은 주무총리가 정한 '판단의 기준'에 기초해서 사용후 제품을 회수하고, 재생자원, 재생부품의 이용(리유스, 리사이클)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①: '지정재자원화사업자'라고 한다.

판단의 기준은 자발적 회수 장소의 지정 등, 자발적 회수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재자원화의 목표[표 2]를 정한다. 재자원화의 실시방법은 사용후의 지정재자원화제품을 각 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을 미리 공표하고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관계법령의 엄수, 자발적 회수 및 재자원화에 관련된 안전성

[표 2] 재자원화 목표(중량 %)

구분	품목	목표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50%
	노트북 컴퓨터	20%
	브라운관식 표시 장치	55%
	액정식 표시 장치	55%
소형 2차 전지	밀폐형 연축 전지	50%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60%
	밀폐형 니켈 수소 축전지	55%
	리튬 축전지	30%

주석: 목표치는 회수량에 대한 재자원화된 양의 비율

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1-2-7. 지정부산물

다음과 같은 '지정부산물'을 공장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시키는 사업자 ①은 주무총리가 정한 '판단의 기준'에 기초해서 그것을 원재료로써 재이용하고 재생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①: '지정부산물사업자'라고 한다.

지정부산물은 석탄회(전기업) 토사, 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목재(건설업)

판단의 기준은 부산물에 의해 크게 차이가 있지만 재생자원 이용촉진계획을 작성하고 실시 상황을 기록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2. 품목·업종 폐기를 처리·재활용

본 가이드 라인은 경제산업총리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재활

용에 대해 활동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재활용을 목표, 회수 시스템의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90년에 처음으로 제정됐다. 본 가이드 라인은 이후 여러 번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 재활용 관련법 대상에는 없는 품목·업종에 대한 자주적인 활동을 집대성

② 재활용 관련법 대상인 품목·업종에 대한 실시 지침

본 가이드 라인은 산업계 대표, 소비자 대표, 학계 대표로 구성된 산업구조심의회장에서 책정되고 그 실시 상황이 검토된다는 의미에서 행정, 사업자, 소비자간의 자주 협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양 가이드라인의 대상 35품목·18업종(표 3), (표 4)에 의해 일반폐기물의 약6할, 산업폐기물의 약 5할을 커버하고 있다.

3. 순환형 경제 시스템 고도화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폐기물·재활용 관련법 체계가 정비되고 이 룰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사업자, 소비자, 각 지역 등 관계 주체 사이에 ① 부담의 공평성 ② 대상업종·품목의 적용범위 ③ 재활용 수단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일부 혼란, 의문,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심의회 환경부회 폐기물·재활용 소위원회의 기획 워킹 그룹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2002년 2월에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란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다음과 같은 15개의 액션 플랜을 제안했다.

- 액션 플랜 1 : 활동 대상의 확대

① EPR·역할분담론'의 재확인

② 자원유용성·처리곤란성의 관점에서 활동 대상의 재검토

③ 유해물질삭감을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 처리·재활용 가이드라인에 포함

④ 화학 재활용 등 재활용의 적절한 추진

⑤ 폐기물 처리법의 재검토

⑥ 지방자치체의 폐기물 행정의 개혁

- 액션 플랜 2 : 활동의 실효성 향상

⑦ 제품 평가의 고도화, (국제)규격화

⑧ 환경 라벨 등의 활용에 의한 정보제공

⑨ 3R 활동의 그린 구입법에 대한 위치 확립

⑩ 재활용을 등 수치목표 가이드 라인에 책정

⑪ 회수율(량)의 목표화

액션 플랜 3 : 국제적 측면에 대한 대응

⑫再生资源·중고품의 국제 상황 파악, 국제마켓의 정비

⑬ 아시아 국가에서의 순환형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력

⑭ 수입품에 대한 3R 고려 설계의 의무 확립

액션 플랜 4 : 순환 비즈니스의 진흥

⑮ 순환 비즈니스의 진흥에 대한 검토

4. 순환형 비즈니스 자립적 발전 목표

앞에서 서술한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에 이어서 산업구조심의회 환경부회 폐기물·재활용 소위원회는 순환 비즈니스 워킹 그룹을 설치하고 남은 과제인 순환 비즈니스의



[표 3] 품목별 가이드 라인 대상품목(35품목)

· 종이	· 유리병	· 스틸 캔	· 알루미늄캔
· 플라스틱	· 자동차	· 오토바이	· 타이어
· 자전거	· 가전제품	· 스프링매트리스	· 대형가구
· 카펫	· 모포	· 건전지	· 소형2차전지
· 자동차용납축전지(이륜용포함)	· 카세트봄베	· 에어졸 캔	· 소형가스봄베
· 소화기	· 빠짱꼬 유기기	· 컴퓨터, 주변기	· 복사기
· 가스, 석유기기	· 섬유제품	· 윤활유	· 전선
· 건설자재	· 욕조, 욕실 유니트	· 시스템 키친	· 휴대전화, PHS
· 형광관 등	· 자동판매기	· 렌즈용 필름	

[표 4] 업종별 가이드 라인 대상업종(18업종)

· 철강업	· 종이, 펄프 제조업	· 화학공업	· 판유리 제조업
· 섬유공업	· 비철금속제조업	· 전기사업	· 자동차제조업
· 자동차부품제조업	· 전자, 전기기기제조업	· 석유정제업	· 유통업
· 리스업	· 시멘트 제조업	· 고무제품 제조업	· 석탄광업
· 가스업	· 공장생산주택 제조업		

창출과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여 환경 경영의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 환경조화형 제품·서비스 수요의 확대, 환경조화형 제품·서비스 제공의 확대 기술 발전의 추진, IT를 이용한 시장의 창조, 폐기물 처리법을 포함한 재활용 관련법 제도의 적절한 규제개혁·정비·운용을 2002년 6월에 중간 결과(안)로써 공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이 제안들을 기초로 구체적인 시책의 전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맺음말

일본이 '자원과 환경의 제약' 아래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순환형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법체계가 산업구조심

의회의 정책의 검토·제안을 바탕으로 관계주체에 의한 성실한 추진, 수행이 기대된다. ☐

독 자 쥬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쥬령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